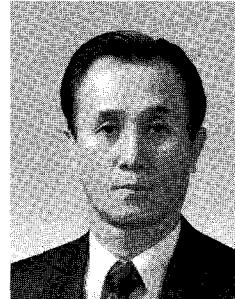


特別企劃

製造物 責任法(PL법)과 골판지包裝 製造者의 責任論 解說



유진판지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원 식

목

자

1.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2. 제조물책임이 제기된 이유
3. PL법상 제조물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4. 골판지포장과 제조물 책임
5. 골판지포장이 PL법 적용 대상일 경우의
골판지포장업계 대응 전략

1. 제조물 책임법(PL법)의 의미

PL법(Product Liability) 즉 제조물 책임법은 미국에서 발전한 결함제조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일컫는 말로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조업자등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등의 공업적인 제조 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판매업자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조류로서 정착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차원의 일련의 보상규정인 셈이다.

현재 미국, EU, 일본등 선진국 뿐만아니라 중국, 필리핀

등 세계 27개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고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세계화 시장에서 공생관계가 성립되었다.

1996년부터 유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 정보화 시대의 대량유통 소비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 거래의 확대기반 구축으로 제조물 책임문제는 국내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법률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이 가져올 영향은 첫째,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시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그 피해를 구제하고 둘째,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해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씀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결함 제품으로 인한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과실의 입증」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간의 소모적인 분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결국 무결점 제품을 만들어 소비생활에 애로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이며, 기업들은 PL법의 적용을 두려워 하기에 앞서, 품질규격의 끊임없는 개선과 선진기법을 도입运用하여, 양질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PL법과 조화되어가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2. 제조물 책임이 제기된 이유

제조물 책임법이 오늘과 같이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에서 발전한 엄격한 제조물 책임법의 전개와 판례의 집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등 세계각국의 공통적 배경은

- ①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
- ②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 ③ 제조물 책임문제에 대한 국제적 균형의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

미국, EU, 일본등 선진국들의 산업특성은 생산과 소비가 분화되어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대량생산, 대량소비는 제품이 복잡, 고도화되어 사고발생시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 분쟁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기업의 힘이 거대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약체화를 가져와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선진국 이상의 대량생산, 대량광고, 대량판매라는 시장구조가 확립되어있고, 오히려 제조물 책임문제 제기가 가능한 공업제품을 미국이나 EU등 여러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브랜드 신뢰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계속 구입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무리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불량자동차 추방 운동을 일으킨 랠프네이더(Ralph Nader(美))변호사의 소비자운동 활성화, 그리고 1962년 존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의 소비자 보호 특별 연두교서의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천명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크게 고양되었다.

즉 ① 안전할 권리(the right to safety)

② 알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③ 선택할 권리 (the right to choose)

④ 의견을 반영할 권리 (the right to be heard)이다.

이러한 권리의식을 더욱 발전시켜 재판상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을 주장도록 하거나 제도상의 권리확립에 크게 기여

해 제조물 책임법이 입법화 되기에 이르렀다.

3) 제조물 책임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균형

EU의 시장통합은 지역내에서의 사람, 물건, 금,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목적으로 한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내의 법제 통합을 진행시키고 있다. ISO 9000 시리즈의 품질보증 시스템을 유럽 규격으로 채택했고, 제조물 책임에 관한 EC지침을 채택해 현재 가맹국 모두가 입법한 상태다. 이처럼, 국제적인 입법추세에 따른 법원칙의 수립은 국제적인 균형을 기하면서, 자국의 소비자 보호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PL법 제정 필요성의 국제적 환경은 주요 구미 제국들이 PL법 입법(유럽)내지 제조물 책임판례법(미국)의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PL법을 시행한 「선진국」이고, 엄격 책임이 정착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 배상이나 증거 개시제도(discovery) 등 소비자측에 유리한 법제도가 설정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EU제국 대다수(14개국)와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제국(14개국)에서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 : EC)지침에 의거 국내입법을 완료, 제조물의 결함에 의거한 무과실 책임을 채택하였다. 또한 그외 러시아, 헝가리도 입법완료.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도 1991년과 1992년 시행. 필리핀과 중국이 1992년, 1993년에 입법완료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1994년 6월에 입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으로 볼 때 선진국과 중진국 가운데 PL법을 입법하지 않고 과실책임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뿐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게 사실이었다. 불공정한 경쟁으로 제조물의 책임을 지지않는 한국 기업의 부당한 우대 특혜 또는 한국의 소비자를 희생해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시행을 준비한 것은 시행제국들과의 시장 경쟁에서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3. PL법상 제조물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현행 제도하의 제조물 관련사고 피해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적용하였고,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주의의무(注意義務)의 태만】을 입증해야 되었다. 그러나 제조기술이 고도화,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입증이 곤란해졌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 시킨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좀더 쉽게 구제하는데 PL법(제조물 책임법)의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소비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따른 손해배상을 받을려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손해 ③ 손해와 고의또는 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했다.

그러나 PL법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받을때는 ① 제조물의 결함 ② 손해의 발생 ③ 손해의 발생과 결함과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된다. 즉 주관적인 「고의·과실」의 요건이 객관적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의 주관적인 요소인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이라 할수 있겠으나, 그러나 「결함」이 없는한 제조업자는 책임을 지지않는 「결함책임」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결국 범죄적 동기가 상당히 내포되었느냐는 원인과 피해 사실을 피해소비자가 규명해야 하는 증거제시적 어려움으로 상대적인 제조업자가 보호받고 있었던 반면, PL법은 제조물의 결함만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소비자 우선 보호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차이일 것이다.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과 PL법(제조물 책임법)의 책임요건 비교

〈민법 불법 행위 책임〉	〈PL법 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제조업자의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 ① 제조물의 결함 ② 손해의 발생 ③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4. 골판지 포장과 제조물 책임

먼저 제조물 결함의 유형 및 결함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결함의 유형	결함의 판단기준
· 제조상의 결함	· 표준탈기준(標準逸脫基準) : deviation from the norm test)
· 설계상의 결함	· 소비자기대기준(消費者期待基準) : consumer expectation test)
· 지시, 경고상의 결함	· 위험효용기준(危險效用基準) : risk utility test) · 바커기준(Barker Test)

등이 선진국의 판례로 적용되고 있다.

1) 골판지포장과 제품결합성과 재산적 피해

업계특성상 수주산업이 가지고 있는 중간 생산자의 제조 책임상 KS 규격 및 ISO 표준규격등이 제품결합의 면책기준이 될 것이다. 파강, 압강 등 발주자 요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면 제품결합성은 배제될 것이다.

즉 골판지 업계의 제품 결합성 배제 및 면책대책으로는 첫째. 발주업체의 요구사항 규격에 맞추고,
둘째. 완성 제품생산자와 제품 특성상 <취급주의>사항 협의표시

셋째. 완성품과 포장물의 인과관계적 주의사항 준수등, 결국 완성품 소비자가 피해 청구를 당했을시, 중간 수주생산 납품된 포장상자는 재활용품으로 회수처리가 대부분으로, 포장물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면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포장재도 제조물임으로 만약을 대비하여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97년도 현재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현황은 1500여건에 보험료 규모가 연 89억원 수준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것은 생산 COST상 부담이 당연히 되지만, 문제발생시의 보상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신중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골판지 포장과 제품안정성과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골판지 포장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피해는 극히

미미하다 할 것이다, 특수한 경우 즉 포장박스의 보관창고의 저장규정을 위반하여 고단적재로 넘어져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는 발생될 수 있다. 이것은 수주된 골판지 및 포장박스를 안전하게 운송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자의 의무는 종료되며, 도착후의 주의의무는 발주자가 지는 것이 법리에 맞을 것이다.

3) 골판지 포장이 PL법 적용대상 제조물 여부

각종 기고문들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식품가공 및 공산품 중 일반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되는 완성품이 주된 적용대상이지만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이 가능토록 확대 적용 될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가령 완성품과 포장박스가 결합된 상품의 고단적재시 내용물 중량에 의해 와해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시 PL법상 적용 기준은 상자의 제조상 면책받기 위한 예방대책이 되었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PL법이 시행전이어서 발생 판례등이 정립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민법에 의한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겠으나, 소극적인 원인제공대상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확대 적용 대상이냐에 따라 그 범위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될 것이고, 업계에서도 그 대비책에 큰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므로 골판지포장이 갖는 PL법 적용대상 범위를 설정하여 성문화 되어야만 추상적인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뿐 아니라 제조물 책임보험료등의 산정에도 명확한 잣대설정이 될 것이다.

5. 골판지 포장이 PL법 적용 대상일 경우의 골판지 포장업계 대응 전략

골판지포장이 PL법 적용이 될시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세부적인 기준설정이 중요할 것이다.

즉 수주된 골판지 제조자 책임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가)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면 될것인가

나) 완성품 제조업자의 최종 주의 의무까지를 연대하여야 할 것인가

포장업계로서는

첫째 : 수주된 표준규격의 준수 및 문서관리의 명료화로

원인규명의 대처가 필요하며

둘째 : PL법의 위배 가능성을 사전 검색 및 예방조치 기능의 확대

셋째 : 업계차원의 입법취지에 맞는 명확한 적용범위의 설정 및 성문화

넷째 : 업계의 불의의 피해차단을 위한 적용범위 및 사례별 홍보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1) 제품결합(표준강도미달) 대책

골판지 업계의 제품상 결합으로 인한 피해요소는 강도미달로 인한 내용물의 손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발주자의 완성품 요구특성상 강도조정도 있을 수 있을것이며, 특별협약이 없을시는 KS규격에 따른다 등의 명확한 발주사항 명시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지정 원·부자재로 생산시에도 규정강도가 미달될시 원·부자재 재질 부적합에 따른 제2, 제3의 구상권청구문제가 야기될수 있으므로 ISO 9000시리즈등 국제, 국내의 품질규격에 맞는 철저한 공정에 의거한 제조활동도 그 대책이 되리라 생각된다.

2) 포장제한 기준 포장 규격의 명시거래 대책

포장제한 기준 및 포장규격의 명시는 환경부 고시 제99-123호(99.8.6) 등에 의거 용기 또는 포장에 인쇄 표시도록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등의 의무고시가 되어 지난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용기 유지의 안정성 및 소비자의 안전고지에 통일된 규격을 지정하였는데 의미가 있으며, 업계에서는 본 고시조항을 성실히 지킴으로써 최소한의 PLP(PL Prevention : 예방대책) 대응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수되는 문제점들은 건별 세밀히 점검하여 PLD(PL Defence : 방어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3) 취급, 보관, 발주계약서 거래 대책

제 적용법률에 의거 「결합」이 없었다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의 판단에 따른 피해 청구 발생시 업계로서는 PL법 제7조 (면책사유)가 최대한 보호벽이 될 것이다.

이는 전술한대로 공급자 무과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정이 기록보전에 의거 유지되고, 표시의무 및 포장제한 기준 및 규격등 위법 사실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야 할 것이며, 포장재 공급자로서의 책임범위를 사전에 점검 발주계약서상 누락등의 발견보완이 사고방지에 주요한 초점이 될 것이다.

4) 포장강도 품질표시, 취급, 주의표시 인쇄의 적정화 대책

- 동일한 원·부자재로 공정투여된 제품이라도 기계성능 등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 의해 표준강도 등이 가감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완제품 검수후 표시품질에 적합여부가 판정될 것으로 적절한 품질규격이 유지되어야 될 것이며, 취급

주의표시 인쇄의 적정화는 각 법률로 정한 표시규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법에서 요구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소비자 즉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의 예방과 대책을 성문화 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시 하는 선진제국들의 요구조건에 따라야 국제상거래에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복잡성속에서, 후발 개도국들의 대처에는 매우 힘겨운 면도 있을 수 있으나, 제조자들의 주의와 양심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양자의 상대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강구만이 PL법의 입법취지나 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국제화 시대의 일등국민 덕목 모집

본지『5대캠페인』의 하나인『일등국민운동』을 위한『도덕양양 실천 덕목』을 모집 하오니
국제화 시대의 일등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접편, 송부하여주
실 것을 삼가 바랍니다

접편요령

- ① 제(題) : 덕목의 제목
- ② 덕목의 상징적 표현(격언적, 경구적)
- ③ 덕목에 관한 해설
- ④ 매수 : 200자 원고지 5~6매

특기사항

- ▣ 채택된 덕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우송하여 드리며, 앞으로 발간할『일등국민 덕목집』에 수록하여 드립니다.
- ▣ 주소·성명·근무처·소재지·직위·전화·명기
- ▣ 사진 1매 동봉